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 (최형두의원 대표발의)

| | |
|----------|-------|
| 의안 번호 | 19830 |
|----------|-------|

발의연월일 : 2026. 7. 8.

발 의 자 : 최형두 · 성일종 · 김예지
김은혜 · 박충권 · 최은석
이진숙 · 이준석 · 김성원
서천호 의원(10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공무원의 정치적 중립성을 보장하고 공직의 공정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국가공무원 및 지방공무원의 선거운동을 원칙적으로 제한하고 있음.

한편,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임용하는 보좌관·비서관·비서 등 정무적 업무를 수행하는 공무원은 일반직공무원과 달리 해당 단체장의 정책결정 및 정무적 업무를 보좌하기 위하여 임용되는 직위로서, 임용과 면직이 단체장의 재임기간 및 신임 여부와 밀접하게 연계되어 있고 직무의 성격 또한 일반적인 행정업무와 구별되는 특수성을 가지고 있음.

특히 지방자치단체장의 보좌관·비서관·비서 등 정무적 업무를 수행하는 공무원의 경우 국회의원의 보좌직원과 유사하게 정책보좌 및 정무기능을 수행함에도 불구하고, 현행법 상 선거운동이 전면적으로

제한되어 있어 직무의 성격에 비추어 불합리하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음.

이에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보좌관·비서관·비서 등 정무적 업무를
수행하는 공무원에 대하여 선거운동을 허용함으로써 직무의 특수성을
반영하고 국회의원 보좌직원과의 형평성을 제고하는 한편, 지방자치행
정의 책임정치 구현에 기여하려는 것임(안 제60조제1항제4호).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

공직선거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0조제1항제4호 단서 중 “「정당법」 제22조(발기인 및 당원의 자격)제1항제1호 단서의 規定에 의하여 政黨의 黨員이 될 수 있는 公務員(國會議員과 地方議會議員외의 政務職公務員을 제외한다)은”을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공무원은”으로 하고, 같은 호에 각 목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가. 「정당법」 제22조제1항제1호 단서에 따라 정당의 당원이 될 수 있는 공무원(국회의원과 지방의회의원외의 정무직공무원을 제외한다)

나.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보좌관·비서관·비서 등 정무적 업무를 수행하는 공무원

부 칙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지 아니하다.

<신 설>

<신 설>

5. ~ 9. (생 략)

② (생 략)

가. 「정당법」 제22조제1항
제1호 단서에 따라 정당의
당원이 될 수 있는 공무원
(국회의원과 지방의회의원
외의 정무직공무원을 제외
한다)

나.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보
좌관·비서관·비서 등 정
무적 업무를 수행하는 공
무원

5. ~ 9. (현행과 같음)

② (현행과 같음)